

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 등 개정(안) 대비표

▣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(기업용)

조 항	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 6 조(담보) 제②항</p>	<p>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담보물이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이거나 유리한 조건이 기대될 경우에 한하여 은행이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·시기·가격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, 그 취득금에서 제비용을 뺀 잔액을 제 13 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,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 곧 갚기로 합니다. 이 경우 은행은 담보물을 처분하기 10 일전까지 담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개시결정이 있기 전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예견되는 경우에는 처분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기로 합니다.</p>	<p>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「민사집행법」에 따른 임의경매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, 다음 각 호의 경우 채권자는 담보목적물로서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,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3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. 이 경우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가 있으면 곧 갚기로 하며, 채권자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. “채무자 등”은 채무자, 설정자,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2.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.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.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<p>③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채권자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,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채권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담보권실행의 방법 2. 피담보채권의 금액 3.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. 담보목적물로서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	<p>- 사적실행요건·절차 등의 객관적 기준 구체화(공정위 및 금감원의 권고 반영)</p> <p>- 사적실행시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 강화</p>